

국민제안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모든 제안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제안을 조회하기 위해 제안신청번호 또는 본인인증수단(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정보

제안 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602-0000369
접수일	2026-02-02 13:54:17
처리에정일	2026-03-04 23:59:59
담당자(연락처)	정채은 (044-202-8878)



답변일

2026-04-22 19:50:5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관련: 국민제안 (1AB-2601-0012354)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조끼일체형 호흡보호 Safety IP 및 콘크리트 펌프카 Safety IP 적용 검토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끼일체형 호흡보호 Safety IP 관련 답변

○ 밀폐공간에서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면 1)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위험을 확인하고 2) 환기가 불충분할 경우 환기를 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3)위의 조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조끼일체형 호흡보호 Safety IP는 1분간 산소를 공급하여 대피시간을 확보 한 후 방독마스크와 유사하게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보이며,

- 이러한 장비 만으로는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모든 밀폐공간 작업 시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함

○ 한편, 우리부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및 가스농도측정기 등 대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밀폐공간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Safety IP 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만,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규정으로 모든 산업현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재해예방을 위한 제안에 관한 취지는 공감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나,

- 콘크리트 펌프카 안전보조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 소규모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할 경우, 중·장기적인 검토 없이 의무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기술지원규정(舊 KOSHA GUIDE)』 개정 검토 시,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끼일체형 호흡보호 Safety IP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8), 콘크리트 펌프카 Safety IP는 건설산재예방감독과(044-202-89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6-07-22 19:50:53

첨부파일

채택여부 불채택



만족도 평가하기

재심사 요청

인쇄

목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 >](#)



오류신고·
이용문의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번

(무료, 365일 24시간 안내가능, 수어상담 평일 09:00~18:00)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600-8172(유료), 070-4140-1458(유료), 평일 09:00~18:00)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자주하는 질문](#)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이 누리집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